

1. 선물·옵션 부당투자 및 조합손실 초래

2. 제재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4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6조의2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여유자금을 선물·옵션에 직접 투자할 수 없음에도

○○ ●●●은 2003.2.24. ◆◆증권 △△지점에 선물·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동 증권사 지점의 ☆☆ ○○○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2003.11.4.~2004.5.25. 기간 중 4회에 걸쳐 신협외의 여유자금 총 16억 46백만원을 동 계좌에 입금하여 선물·옵션에 투자하였으며, 이와같은 부당한 투자로 인하여 이번 검사착수일(2008.3.24.) 현재 총 16억 41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초래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문책경고 4명
직원	면직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4조
2. 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」 제17조의2
3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6조의 2